

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2
----------	-----

2019년 9월 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9년 8월 7일
- 다. 회부일 : 2019년 8월 13일
- 라. 상정일 :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9년 8월 2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엄연숙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
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8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진로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.
- 또한, 「청소년 기본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3)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4)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
- 개관일자 : 1994.07.21.
- 시설규모 : 부지 41,328㎡, 건물 6,381㎡ (지하 2층, 지상 3층)
- 지원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, 청소년극장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
5)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0.1.1.~2022.12.31.)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7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725백만원(2019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961백만원, 물건비 843백만원, 경상이전 225백만원, 자본지출 204백만원, 사업비 2,175백만원, 사업 외 지출 185백만원, 예비비 등 132백만원

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사항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‘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’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2019년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, 의회의 동의(2012.7.9) 후 6년이 경과하여,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점에 다시 동의를 받고, 3년간(2020.1.1.~2022.12.31.)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선정하려는 것임.
-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근로 권익교육, 동아리활동, 참여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 2018년 178개 사업을 계획하여 177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, 비교적 낮은 청소년 이용률(2019.6.기준 65.6%)을 보이고 있으며, 종합성과평가 결과도 78.4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.

〈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
- 개관일자 : 1994.07.21.
- 시설규모 : 부지 41,328㎡, 건물 6,381㎡ (지하 2층, 지상 3층)
- 지원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, 청소년극장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0.1.1.~2022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4,725백만원(2019년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사항 없음.

〈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현황 〉

- 재위탁 횟수 : 2회, 총 수탁기간 :10년
 - 1차 1994.07.01.~1997.06.30. (사)상회원(신규 공개모집)
 - 2차 1997.07.01.~2000.10.31. (사)상회원(재계약)
 - 3차 2000.11.01.~2003.10.31.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(재위탁 공개모집)
 - 4차 2003.11.01.~2006.10.31.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(재계약)
 - 5차 2006.11.01.~2009.11.30. (사)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(재위탁 공개모집)
 - 6차 2009.12.01.~2012.12.31. (사)한국청소년세상(재위탁 공개모집)
 - 7차 2013.01.01.~2014.12.31. (사)한국청소년세상(재계약)
 - 8차 2015.01.01.~2017.12.31. (사)한국청소년세상(재위탁 공개모집)
 - 9차 2018.01.01.~2018.12.31. (사)한국청소년세상(재계약)

〈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이용률 현황 〉

(단위:천원)

구분	이용인원	청소년 이용인원	청소년이용률
2017년	796,365명	577,834	72.6%
2018년	749,643명	545,536	72.8%
2019년 6월	290,603명	190,599	65.6%

- 종합성과평가(서울시, 2019.5.13.~15.)에서 낮은평가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, 채용공고 내용(채용 자격요건 - 소방안전관리자격증)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고, 근로계약서 부적정(임금 미명시, 법인명의로 아닌 수련관장이 명의로 작성), 보수 공사 시 재료비를 중복하여 과다산정한 회계 부정 등이 지적됨에 따른 것임.
- 청소년수련관의 인사·회계·재산관리 등의 문제점은 특정 수련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, 거의 대부분의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,

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한 2015년부터 이러한 인사·회계·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, 평생교육국은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판단하여, 교육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고,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평가팀을 신설하여 지도·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문제가 계속 적발되어, 시정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, 또 다시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바, 수탁 법인이 개선의지가 있는지 여부, 지도·점검이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- 한편, 수서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법인대표가 상근의무를 위반하여,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(‘셀프 징계’ 사항)되는 등 민간위탁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지가 없는데,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통한 시설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고 하겠음.

< 최근 3년간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지적사항 >

- 종사자 시설안전관리요원 채용시 “서울시청소년수서수련관 직원 채용공고” (2019,11,12) 채용자격 요건에는 1번 “소방안전관리자격 필수” 라고 공고하였으나, 채용합격자는 시설관리경력은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
- 인사관리의 중요자료인 인사기록카드에 호봉 확정, 상벌 등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
- 직원채용 시 경력증명 전력조회 미실시
- 근로계약서의 작성 당사자(사용자)는 수탁자(법인)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시설장(수련관 관장) 계약을 체결하고,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않음
- 18년 내진성능평가 보수공사, 노후 출입문(방화문) 공사 등 공사를 시행시 원가산정에 재료비를 중복포함하여 과다 산정, 일부 자재에 규격을 적시하지 않고, 감독 일지, 자재검수,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누락 등 공사관리 미흡
- 법인카드 관리는 사용시 사용자의 직성명을 미서명 사용
- 정기재물조사는 시행하였으나, 조사결과가 실제물품과 다르고, 일부물품은 조사목표 미작성, 조사표 미부착되어 있음

- 불용물품에 대해 전자자산처리 시스템(On-bid)'에 의한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, 수련관 외부에 방치되어 있음
- 규모가 큰 수련관의 특성상 현재 보유한 물품을 팀별 소관 물품을 사실 그대로 파악하여 재물조사 물품과 비교관리 하는 등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필요
- 소모품 관리대장은 전년도 이월분, 일정기간만 작성 하는 등 관리가 미흡
- 종사자 및 각 프로그램별 시설이용자의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이 실적을 통합,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재
- 분기 1회씩 연/4회 운영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반기 1회씩 개최하고 있음(2018년 2회 개최)
- 중장기 계획이 12대 전략 과제 및 25개 핵심추진사업은 수립되어 있지만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어 계획의 내용은 구체성이 결여 되어 있음
- 사무편람은 비치되어 있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무에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.
- 프로그램 분야별 사업결과 보고서가 작성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합 및 종합한 실적 관리가 다소 미흡하고, 각 개별프로그램이 추진하려고 하는 종합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
- 학교연계 사업, 동아리 지원사업, 체험활동 사업,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계획 수립·운영하고 있으나, 실행세부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
- 45개 기관과 MOU 체결하고, 매년 체결기관을 정비하고 있으나 추진실적관리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음.
- 월별 홍보 실적을 홍보 수단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적관리 통합이 필요함.
- 홍보 결과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차기 홍보 계획 반영이 미흡
-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목표가 항상 전년도 대비 하향 조정되어 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수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
- 진로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
- 또한,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
- 개관일자 : 1994.07.21.
- 시설규모 : 부지 41,328㎡, 건물 6,381㎡ (지하 2층, 지상 3층)
- 지원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체육관, 청소년극장, 프로그램실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0.1.1. ~ 2022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,725백만원('19년)

- 산출근거

- 인건비 961백만원, 물건비 843백만원, 경상이전 225백만원, 자본지출 204백만원, 사업비 2,175백만원, 사업외 지출 185백만원, 예비비 등 13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(☎2133-4122)